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2. 18.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회의(2009년 12월 3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가. 제안이유

○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여행주차장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할인율 조정 등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한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일부규정을 개정함(안 제12조제3항)

○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함(안 제27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규정을 개정함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요금할인을 20% → 30%로 상향 조정(안 별표 1 비고 제12호)
-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 발행 가능(안 별표 1 비고 제17호)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9년 3월 18일 개인택시 등 노상주차장 정기권 발행,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30% 감면, 5월 28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후 서울특별시가 이와 같은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전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부칙에 [별표 1]의 비고 제12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요금할인 규정의 개정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4. 審査結課 : 原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54 호

제출연월일 : 2009.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맞춰 여행주차장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할인율조정 등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한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의 일부규정을 개정함(안 제12조제3항)

나.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함(안 제27조)

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규정을 개정함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요금할인을 20% → 30%로 상향 조정 (안 별표1의 비고 제12호)

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규정을 신설함

-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 발행 가능 (안 별표1의 비고 제1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

(2) 입법예고('09.10.15 ~ 11.4)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사무 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이상으로 한다.

②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비고에 제12호 중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를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로 한다.

별표 1의 비고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 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비고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제27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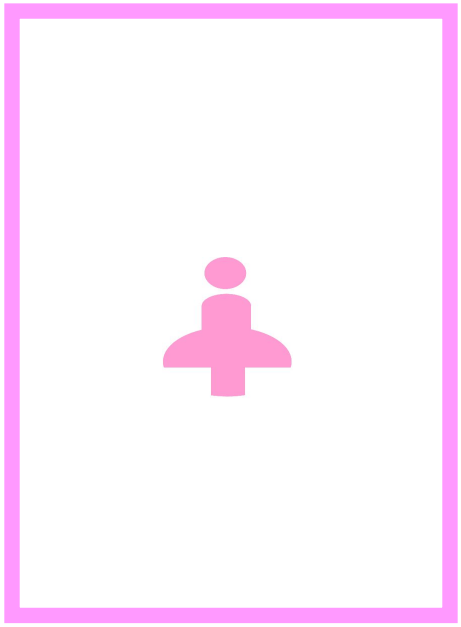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 × 세로 155㎝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등) ①~②(생략) ③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4,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신설〉	제27조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등)①법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이상으로 한다. ②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표〉 (생략) 〈비고〉 1.~11.(생략) 12.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표〉 (현행과 같음) 〈비고〉 1.~11.(현행과 같음) 12. …… …… …… ……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13.~16.(생략)	13.~16.(현행과 같음)
	〈신설〉 17.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 할 수 있다.